

●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5-89호

『전파법』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체납자에게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에 따라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으로 **반송되어** 「국세기본법」 제11조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**공시송달**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**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**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** 「질서위반행위 규제법」 제24조에 의거 「국세징수법」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채재산권 등 **귀하(사)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**함을 알려드립니다.

2025년 10월 28일

서울전파관리소장

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

- 1. 제목 :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
- 2. 근거 : 「전파법」 제90조(과태료)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(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), 「국세징수법」 제31조(압류의 요건 등)
- 3. 공시송달 대상

연번	고지번호	체납자명	실명번호	최초부과일	체납액	고지주소
1	0162250191980000803	주식회사 월*스틸	110111-676**** (121-87-00***)	2025.5.30.	316,200	서울특별시 동작구 등용로 71-*, 10*호

- 4. 공시송달 내용 : 체납자에게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 예고통지서를 (공시)송달하였고,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과태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「국세징수법」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채재산권 등 **귀하(사)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**함을 알려드립니다.
- 5. 공고기간 : 2025. 10. 28. ~ 2025. 11. 10.(공고 게시일로부터 2주간)
※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.
- 6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(☎02-2680-1708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